

의안번호	2216179
의 퇴 인	강경숙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 계 번호	26D03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소재지) 신설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둠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신설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을 둠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2(소재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신설	

2. 상세 사유

-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주시로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및 헌법재판소 도서관 근거규정 마련(안 제19조의5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전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청사건축비, 기관 이전비, 직원 정주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19조의5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 청사 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헌

법재판소 도서관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헌법재판소와 함께 전주시로 이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전주시에 건립될 헌법재판소 청사(도서관 포함)의 대지면적·건물연면적, 기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설치·공사비, 직원 이사지원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 토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 건립될 헌법재판소 청사의 이전부지 위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전부지, 청사연면적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관이전비 및 직원 정주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전 규모, 이사 직원 수 및 1인당 평균 이사비용¹⁾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당시 소요된 이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비용

구분		비용
기관 이전비	기관이사비	이전 직원 1인당 평균 281만원
	설치·공사비	이전 직원 1인당 평균 559만원
직원 정주비용	이사지원비	이사 직원 1인당 평균 142만원
	이주지원비	이전 직원 1인당 월 20만원(2년간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5] 이전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nabo.go.kr